

영등포구의회
제16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6. 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盧 相 沃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34호로 2012년 5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을 통하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운영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제고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민간인의 포상금 지급대상 포함

(안 제2조제1항)

나.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특별공적 범위 조정(안 제2조제2항)

다. 특별한 징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은 징수사례 포상금 지급 제외(안 제2조제4항)

라.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 개선으로 객관성 제고(안 제5조)

마. 기타 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5. 검토의견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서울시 감사관 주관으로 실시된 최근 3년간 징수포상금 지급실태에 대한 조사결과 주요 지적 사항과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서울시로 부터 통보된 표준안을 근거로 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것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제1항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있거나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으며
- 안 제2조제2항에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특별한 공적 범위를 영등포구 세입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하여 체납 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 강제 징수한 경우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등으로 조정하였으며
- 안 제2조제4항에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이 수반되지 않는 체납세액고지서 발송에 따른 체납액 징수, 단순히 경·공매 사건에 교부 청구하고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징수유예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 안 제5조에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 구성 운영 방안을 개선하고자 현행 내부 위원 5명을 개선하여 내부 위원

3명과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세입징수 공적심사 위원회 공정성을 제고하였으며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2012년 5월 15일 서울특별시로부터 통보된 자치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개정 표준안을 반영하여 우리구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징수포상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짐.

참 고 자 료

1

서울특별시 자치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표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3조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지난년도 체납액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민간인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제6조에 따른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울특별시 00구 세입금(구세 및 구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른 고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게 한 경우
3.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상응하는 사유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은닉재산’이라 함은 채납자가 은닉한 현금·예금·주식 그 밖에 재산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제외한다.

1. 「지방세기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
2. 세무공무원이 은닉사실을 알고 조사 또는 채납처분 절차에 착수한 재산
3. 그 밖에 채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재산으로서 채납자 본인의 명의로 등기된 국내에 있는 부동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채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채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채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채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채납액을 징수한 경우 (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채납액을 징수한 경우

⑤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시는 3급, 자치구 및 사업소 등은 4급 공무원)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채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부정급수 또는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5. 고의 또는 과실로 지방세를 부당하게 포탈공제 또는 환급받은 자를 적발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통고처분 또는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이하 “탈루세액 등”이라 한다)의 추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 “중요한 자료”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에 준하는 자료를 말한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132조에 따라 고발하고 해당 지방세를 추징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
 - 나. 가목 외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국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세에 대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제공된 자료에 따른 탈루세액등이 신고건당 1천만원 미만이거나 그 자료에 대한 사실검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탈루세액 등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징수액의 100분의 5

(2) **탈루세액 등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50만원+5천만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3

(3) **탈루세액 등이 1억원 초과** : 400만원+1억원 초과징수액의 100분의 2

7.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

8. 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민간인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제3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한다.

제5조(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공적심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00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6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00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2명

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3명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포상금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포상금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지급대상)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지급)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 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환수) 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접수되는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지급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징수분부터 적용한다.